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9일, 유상범의원 등 1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7.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7.27.) 상정, 축조심사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7.28.) 상정, 축조심사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7.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6.7.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상범의원)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또한,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 조치 없이 개표가 강행되었고, 투표함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참관·입회 절차 없는 투표함 반출·이송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뿐만 아니라,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투표 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의혹 등 선거관리 전반에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고, 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계하였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로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

족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존하였는지, 투표함 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참관·입회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였는지,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을 통해서 과잉 진압 등 위법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수사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 종사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포함될 수 있어 통상 수사기관만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기도)

- 수사대상으로 공통적으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고,

상기한 공통 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김은혜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 회피 문제 및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등을, 백혜련의원안은 본투표용 투표용지의 인쇄 물량 산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표의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유상범의원안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투표함이 불법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및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표용지가 보관·전달·이송되거나 타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의혹사건 등을, 한병도 의원안은 전북교육감 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사건 등을 규정함.

○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김은혜의원안 및 유상범의원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백혜련의원안은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자를 추

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병도의원안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함.

○ 조직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김은혜의원안 및 백혜련의원안은 각각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인데 반해, 유상범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으로, 한병도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70인으로 규정함.

○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백혜련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60일로 최대 총 140일인 반면, 김은혜의원안, 유상범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임.

○ 마지막으로 김은혜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 데 반해, 백혜련의

원안과 한병도의원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유상범의원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